

사단법인 고양시 관광 컨벤션 협의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고양시 관광 컨벤션 협의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본 법인의 영문표기는 Goyang Tourism & Convention Association으로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규정에 의한 지역관광협의회 및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 전담조직설립을 통한 지역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경기도 고양시 관내에 둔다.

제4조(지역별 관광협회와의 관계) 법인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규정에 따른 경기도 관광협의회의 고양시 지부 역할을 한다.

제5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관광사업자 및 관광 관련자 네트워킹 및 지원
2. 고양시 관광 및 MICE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고양시 도시마케팅
4. MICE 행사 유치 및 개최 지원
5. 고양시장이 위탁하는 업무 (단, 위탁받은 경우에 한한다.)
 - 1) 고양관광안내센터 관리·운영
 - 2) 고양시 브랜드 관광상품의 판매·운영
 - 3) 고양 시티투어, 캠핑장, 전기기차, 인력거 등 관광시설 운영
 - 4) 문화관광해설사 및 관광워킹가이드 관리 운영
 - 5) 의료관광 유치 마케팅 및 전문인력 양성
6. 회원의 복리 증진을 위한 공동사업
7. 고양시 관광산업 발전과 관련된 제반업무 및 부수된 사업

8. 위 각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
9.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의 자격) ①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정해진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하되 아래 각 호로 구분한다.

1) 일반회원

1. 고양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관광사업자
2. 고양시 관광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관광과 관련되는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2) 특별회원

- ②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회원의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④ 특별회원은 이사회 의결을 받아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 할 수 있다.
- ③ 회원은 법인이 수행하는 홍보나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법인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납부
4. 회원은 관광객의 고양시 유치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인의 회원사업장을 최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공동협의회장 2인
2. 부회장 3인 이하
3. 이사 5인 이상 30인 이하 (협의회장, 부회장을 포함한다)
4. 감사 1인

제11조(임원의 선임) ①법인의 임원은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하고, 선임직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당연직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협의회장중 1인은 고양시 제1부시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2.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 이사로 선출된 것으로 본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④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고양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①당연직이 아닌 협의회장과 부회장, 감사,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1회만 연임 할 수 있고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일 때에는 보선하지 않는다.

②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3조(직무대행) 2명의 공동협의회장이 모두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회장중 연장자가 협의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민법상 행위 무능력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이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5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6조(임원의 직무) ①협의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임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②부회장은 협의회장을 보좌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협의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협의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된다.

제18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며, 협의회장이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총회의 소집은 협의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를 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①협의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그 밖에 중요사항

제21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3조(이사의 구성) 이사회는 협의회장과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이사의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이사회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협의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이사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칠 안건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위원회의 종류와 조정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그 밖에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협의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6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서면결의 금지) 이사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28조(이사의 의결제척사유)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6장 업종별 분과위원회

제29조(분과위원회 목적) 해당 업종을 대표하고, 해당업종의 건전한 발전과 현안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업종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30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분과위원회는 해당 업종별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분과위원회의 임원은 위원장 및 운영위원으로 하며 해당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운영위원의 임기는 법인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④분과위원회의 회원수는 최대 20명 이하로 한다.

제7장 재산과 회계

제31조(재산의 구분) ①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 1과 같다.

③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2조(재산의 관리) ①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재원)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비
2. 지방정부 보조금
3. 사업 수입금
4. 각종 기부금
5.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6. 그 외의 수입금

제34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법인은 회계연도 1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시 승인을 얻는다.

②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③CVB단의 예산과 회계는 명확히 구분하여 별도 관리한다.

제36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장 사무기구

제39조(사무국) ①협의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사무국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④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40조(C.V.B.) ①본 조 제3항의 직무를 전담하기 위해 CVB(Convention & Visitors Bureau)를 두고 단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CVB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③CVB단장은 법인의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MICE 행사 유치 및 발굴 (설명회 및 비딩, 사전답사, 정보제공)
2. MICE 행사 개최 지원 (기획, 재정·행정·관광 지원)
3. MICE 도시마케팅 사업 (국내외 광고, 박람회 참가 등)
4. MICE 기반 구축 사업 (정보수집 배포, 인력양성, 컨설팅)

④협의회장은 MICE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CVB단장의 직무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CVB단장은 독립적으로 처리한 업무에 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9장 보칙

제41조(법인해산) ①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해산 시 남은재산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42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업무보고)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고양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운영 규칙」을 준용한다.

제45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2016년 11월 1일
발기인 대표 이 수동(인)

발기인 김 민수 (인)
발기인 공 신애 (인)
발기인 강동민 (인)
발기인 박 미선 (인)
발기인 윤 현 (인)
발기인 최 위국 (인)
발기인 박 성호 (인)
발기인 김 승환 (인)
발기인 이 대복 (인)
발기인 정기호 (인)
발기인 박호한 (인)
발기인 배 순교 (인)
발기인 박 미현 (인)
발기인 국 영진 (인)
발기인 송 종희 (인)
발기인 송 이섭 (인)
발기인 박 권구 (인)
발기인 이 종록 (인)
발기인 김 미현 (인)
발기인 박 지 (인)
발기인 구 서진 (인)
발기인 황 금인걸 (인)
발기인 김정애 (인)
발기인 김 태국 (인)
발기인 김수진 (인)
발기인 김남재 (인)

발기인 이 창국 (인)
발기인 송 영호 (인)
발기인 유동호 (인)
발기인 신기종 (인)
발기인 오 준환 (인)
발기인 송현민 (인)
발기인 김홍수 (인)
발기인 조민성 (인)
발기인 김영 (인)
발기인 이 지혜 (인)
발기인 박 서재 (인)
발기인 강 민국 (인)
발기인 김 득석 (인)
발기인 이정환 (인)
발기인 Animo (인)
발기인 이 동록 (인)
발기인 임 태모 (인)
발기인 나 도은 (인)
발기인 (인)
발기인 (인)
발기인 (인)
발기인 (인)
발기인 (인)
발기인 (인)
발기인 (인)
발기인 (인)
발기인 (인)

발기인

재 산 총 괄 표(목록)

총 계							
1. 기 본 재 산	구 분	소재지	수량	평가액(원)	설립년도 수익액	취득원인	비고
	건 물						
	토 지						
	출연금	-	-				
	소 계	-	-				-
2. 운 영 재 산	품 목	종 류	수 량	금 액 (현재가액)	설립년도 수익액	취득원인	비고
	현 금	-	-				
	컴퓨터	○○	○대	○○만원			
	차 량	○○	○대	○○만원			
	소 계	-		○○만원			-

☞ 기본재산이 현금일 경우는 잔액증명서 첨부

운 영 재 산 세 부 현 황

1. 총 괄

(201 . . 현재)

구 분	수 량	평 가 액	비 고
예 금			
주 식			
채 권			
부 동 산			
기 타			
총 계			

2. 분류별 세부내역

재 산 명	종 류	수 량	평가액(원)	비 고
총 계				

- ※ 1) 운영재산 현황에는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을 기재
 2) 분류별 세부내역에는 총괄에서 분류된 재산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3) 분류별 세부내역의 비고에는 발생 또는 보유사유와 집행계획을 간략히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첨부